

# 서울신학대학교 생활관 지침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생활관 경건훈련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생활관 입사 자격)** 서울신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.

- 1) 교역자과정 이수자로서 경건훈련 의무자
- 2) 신체부자유자
- 3) 지방학생
- 4) 기타

**제3조 (입사절차)** 생활관의 입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1)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시작전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후 생활관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경건훈련 의무자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2) 생활관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학생은 총무처에 소정의 입사비와 함께 손괴방지를 위한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3) 호실은 생활관장에 의해 배정 받는다. 배정받은 호실은 관장의 허락이 없이는 옮길 수 없다.

**제4조 (생활관 입사생의 의무)** 생활관은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일부로서 경건훈련의 도장임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- 1) 생활관에서 행하는 경건훈련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.  
① 새벽기도회      ② 명상의 시간      ③ 의무입사교육
- 2) 생활관에 모든 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시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.
- 3) 소등시간, 기상시간은 관장이 정한다.

**제5조 (외출 및 외박)** 관생이 외출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11시까지는 귀관해야 하며, 외박은 주말에 가능하나 사전에 외박계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 (관내 외부인 출입금지)** 관내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면회는 관외에서 해야 한다.

**제7조 (취사금지 및 화기반입 금지)** 생활관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금한다.

- 1) 관내로의 화기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생활관내에서 적발된 일체의 화기는 생활관장이 압수한다.
- 2) 관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체 금한다.
- 3) 제1)항의 화기라 함은 전열기구 일체와 석유류 및 가스류 사용 기구 일체 및 전기장판 등을 말한다.

**제8조 (퇴사)** 퇴사를 원할 때는 퇴사원서를 생활관장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** (퇴사명령) 관생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퇴사명을 받았을 때는 3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.

- 1) 경건훈련에 불성실한 자
- 2) 생활관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
- 3) 전염병 질환이나 정신질환에 감염된 자
- 4) 기타 부정부당한 행위자

**제10조**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.

**제11조** (생활관의 운영책임) 생활관의 운영책임은 학기중에는 생활관장이, 방학중에는 총무처장이 담당한다. 단, 방학중 학생이 생활관 거주시 총무처장과 함께 협의한다.

**제12조** (지침의 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생활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